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회

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9년 11월 27일
- 회부일자 : 2018년 11월 29일

3. 제안사유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
-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여 조례의 미비점 보완

4.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의의 구체적 명시(안 제2조)
- 예우 및 지원 대상의 구체적 명시(안 제3조)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근거 명시(안 제6조)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강근)

가. 제출배경

- 본 조례안은 도 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월 2만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기 위한 것임.

- ‘19년 당초예산(月 1만원) 및 수정예산(月 2만원)에 반영되었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사업에 대해 당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 본 사업은 법률 규정, 국가 보조재원에 의한 것,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에 의한 보조가 아닌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으로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바, 조례에 지출근거 규정을 예산안 의결 선(先) 조건으로 요청하고 계상된 예산액 전액을 삭감한 바 있음.
 - 본 개정 조례안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료됨.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③ 삭제 <2013. 7. 16.>

나. 주요내용 및 검토 의견

- 조례안 제명을 (현행) 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로 개정된 것은,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에 관한’ 이 일본어 투 표현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되도록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한 바에 따른 것으로 타당함.

- 조례안 제1조는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서 목적 규정에는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권고에 따라, (현행) 법률 약칭을 삭제한 것으로 타당함.
- 조례안 제2조제1항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용어 정의를
 - (현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사람으로 정한 것을
 -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 법 적용대상 규정에 있어 단순히 참전유공자의 개념에 부합한 사람이 아니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고 법 제5조제3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인 바, 조례에서도 법적 절차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제5조(등록 및 결정) ①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할지를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해당 등록신청 서류에 의하여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등록한 날에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된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 조례안 제3조는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을 구체적(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과 도 내 소재지를 둔 참전자 단체)으로 규정한 것임.
- 조례안 제6조는 도 내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임.
 ※ 지급대상 인원('20): 8,957명 / 지급액('20): 2,149,680천원(8,957명×12월×20천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이미 14개 시·도에서도 조례에 규정하고 지원하고 있음.
 - 도비 지원: 14개 시도 ※ 최저 월10천원(경기·전북·경북) ~ 최고 월150천원(세종·제주)
 - 도비 미지원: 3개 시도(충북, 충남, 전남)
- 다만, 절차상 조례에 지원근거를 규정한 이후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나 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 근거 명시와 예산('20 당초예산)계상을 동시에 추진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본 조례안은 도 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절차상으로도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20일)을 거친 바 문제가 없음.

<참고자료> 타시도 참전명예수당 지원현황

(단위 : 천원/월, '19.10월 현재)

시도별	지 원 액			비고
	계	시도비	시군구비	
서울	100	100	-	전상·공상군경, 재일학도, 고엽제 제외
부산	80~230	80	0~150	전상·공상군경, 재일학도, 고엽제 제외
대구	80	80	-	
인천	110~200	80	30~120	
광주	70~90	70	0~20	전상·공상군경, 재일학도, 재해부상군경 제외
대전	50	50	-	
울산	150	90	60	
경기	40~120	10	30~110	
강원	80~180	30	50~150	
충북	100	-	100	
충남	100~250	-	100~250	
전북	50~80	10	40~70	
전남	40~100	-	40~100	
경북	60~100	10	50~90	
경남	200	100	100	
제주	150	150	-	
세종	150	150	-	